



주요심결사례

2002. 12. 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17개 은행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2 공동1226)	(주)한국외환은행, (주)조흥은행, (주)우리은행, (주)제일은행, (주)서울은행, (주)국민은행, (주)하나은행, (주)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대구은행, (주)부산은행, (주)광주은행, (주)전북은행, (주)경남은행, (주)제주은행은 은행수수료 부과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각 은행에 요구하는 제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료로 발급해 왔으나 2001. 4. 26. 19개 은행의 수신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수신전문위원회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제증명서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17개 은행이 공동으로 합의하였으나, 공공기관 발급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합의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동 행위는 각 사업자간의 경쟁을 감소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은행수수료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2002. 12. 2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세라젬의료기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2002경촉1097)	(주)세라젬의료기는 2000년 4월경부터 대리점들과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리점들에게 자기가 제시한 공급가격과 소비자권장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품공급의 중단 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격준수를 담보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대리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2,000만원의 지급보증증권(또는 공증된 약속어음)을 계약해지 후 1년 동안 보관·관리한 후에 교부해 줄 수 있도록 약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01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3월경부터 대리점들의 가격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들과 약정체결과 별도로 가격정찰제 시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리점들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초기 공탁금 명목으로 출연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가격덤핑을 적발하여 제소한 지점에게 적발된 지점의 공탁금액 중 500만원을 포함 상금 명목으로 지급. 적발된 지점에게는 추가로 1,000만원 (2차 적발시 2,000만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출연하게 하면서 3차 적발시에는 폐점조치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등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위반</p>	

2002. 12.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2002독관1446)	<p>(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은 정압기 판매업자인 세종에 이엠씨(주)와는 1997. 1. 24.자로, 중부도시가스(주)와는 1997. 1. 31.자로, (주)진용엔지니어링과는 1997. 1. 23.자로 정압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정압기 판매지역은 계열회사인 대한도시가스(주)의 도시가스 공급권역내로 하며 정압기 판매 3사는 자신의 판매지역에서 별도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이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정압기 판매 3사가 계약이나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압기 판매 3사의 제품 구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제품매매계약을 체결,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행하였으며, 1997. 1월부터 2002. 9월 기간중 세종에이엠씨(주)로부터 598개, (주)진용엔지니어링으로부터 183개, 중부도시가스(주)로부터 32개 등 총 813개의 정압기를 각각 구입하고 구매 전량을 설비시공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p>	◆ 과징금 납부 : 55,000천원



주요 심결 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한국농수산방송, (주) 우리홈쇼핑, (주)현대홈쇼 핑, (주)LG홈쇼핑, (주)CJ 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 등에 대한 건(2002소기 1396, 2002소기1397, 2002소기1398, 2002소기 1399, 2002소기1428)	(주)한국농수산방송, (주)우리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LG홈쇼핑, (주)CJ홈쇼핑은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상품 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주문 수량을 많게 제 시하거나 남은 수량을 축소하여 제시함으로써 상품이 조만 간 매진이 되거나 잘 팔리는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주문수량은 많지 않음에도 마치 주문이 폭증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상품이 잘 팔리거나 더 이상의 구매기회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자신의 상품 가격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시중가와 비교함으 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 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 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 용, 자기의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TV홈쇼핑광고 모델의 출 연료 및 자동주문전화(ARS)시의 가격할인비용의 부담주 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고 납품업 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위를 하였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 비자경품류를 제공할 때 경품부상품 거래가액의 10%를 초 과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 항4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주)우리홈쇼핑, (주)LG홈쇼 핑, (주)CJ홈쇼핑, (주)현대 홈쇼핑은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 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 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주)LG홈쇼핑 : 440백만원 (주)CJ홈쇼핑 : 374백만원 (주)현대홈쇼핑 : 85백만원
제이브이씨코리아(주)의 부 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 한 건(2002유거1789)	제이브이씨코리아(주)는 2002. 9. 10.부터 같은 해 10. 9. 까지 “제이브이씨 추석맞이 윈플러스 원”이라는 판촉행사 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디지털캠코더(GR-DVM76KR)를 구입하는 일반소비자에게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DS- 604S)”를 소비자경품으로 제공하였으나, 2002. 9. 17자로 당초 경품으로 제공한 김치냉장고를 디지털캠코더와 묶음 (폐키지)상품으로 구성,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의 유형및기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경품제공한도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 항제3호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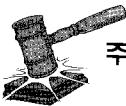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한주택공사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건(2002하일 1596)	<p>대한주택공사는 1999~2001년 기간동안 자사소유의 임대 아파트 및 일반분양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임대아파트 관리는 1998. 8. 5일 확정된 제2차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주택관리사업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2001년 민영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1998. 9. 26. (주)뉴하우징을 설립하고, 1998. 11월부터 (주)뉴하우징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위탁수수료는 일반적인 아파트관리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임대업무를 위탁한다는 명목하에 총 임대 수익의 5~6%를 위탁수수료로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일반 분양아파트 관리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비자회사로서 민간 전문아파트관리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도록 하면서 평당 월정액(29원~34원)으로 책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대한주택공사 및 부영,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관리 전문업체에 지급한 위탁수수료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산정한 용역대가에 비하여도 현저히 높은 수준임으로 볼 때 아파트관리용역시장에서 (주)뉴하우징의 경쟁여건을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각2회 게재하여 공표도록 함 ◆ 과징금 납부 : 3,508백만원
㈔소나이트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2002유거1369)	<p>㈔소나이트코리아(주)는 자신의 가방판매대리점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이 소비자판매가격 등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원이 일반관리비, 대리점마진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소비자판매가격 및 할인율 등을 대리점과 연결된 인터넷사이트(www.esomsonite.co.kr)에 공지하거나 출고거래명세서에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재하여 주문가방과 함께 대리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도록 하고,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동시 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도록 함



주요심결사례

2002. 12. 2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유)로레알코리아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2002단체1700)	(유)로레알코리아는 2001. 9월 화장품 시판부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판경로 제품인 메이블린(MAYBELLINE)의 유통단계별 출하율을 대리점 53%, 전문점 70%, 소비자 100%로 정하고, 자신의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대리점이 전문점으로 공급하는 가격 및 전문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전문점이 할인판매를 할 경우 영업사원 등이 전문점주에게 할인판매 자제요청을 하였고, 할인판매를 하지 않는 인근전문점에 대해서는 판촉물(화장솜 등) 등으로 차별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02. 7. 26. 현재 38개 로레알대리점, 30개 메이블린 대리점과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로레알거래약정서 (M&G)」 및 「로레알거래약정서(L'OREAL)」 제10조에 “율은 갑의 사전 협의없이 갑이 공급하는 상품외에 타 경쟁 회사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제11조에 “갑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화장품전문점 이외의 판매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설정하고 거래하였으며, 2002. 7. 26 현재 444개 약국과 「비쉬(VICHY)」 화장품 거래약정서, 38개 로레알대리점 및 30개 메이블린 대리점과 「로레알거래약정서(M&G)」 및 「로레알거래약정서 (L'OREAL)」를 체결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5호 및 약관법 제11조제1호, 제11조제2호, 제6조제2항제1호, 제14조 위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화장품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보토록 함
(주)태평양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2002단체1702)	(주)태평양은 2000년부터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 시판부문의 주요사업 전략의 하나로 “가격안정화” 정책을 수립하였고, 대리점의 전문점 출하가격 및 전문점의 소비자판매가격이 준수 되도록 유통단계별 상품 출하율을 각 지역사업부로 시달하였으며,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의 가격안정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매월 “월별 시판 AREA 영업전략”이라는 문서 등을 작성, 유통 및 가격질서 안정화 방안을 각 지역사업부에 통보하고, 가격 미준수 대리점, 전문점에 대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하였고,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화장품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390백만원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아이오페(IOPE) 브랜드를 취급하는 전문점 중 약 1,500점에 대하여 본사차원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가격미준수 전문점에 대한 제재조치 수준을 영업지점에 통보하였으며, 2002년 1/4분기 가격조사의 경우 대리점에게 할인판매하고 있는 234개 전문점에 대하여 2002. 3. 30부터 2002. 4. 10까지 12일간 상품공급을 중지하게 하고 15개 전문점에 대하여는 거래를 중단하게 하였고, 자신의 대전지점은 2001. 9월경 “에스더”, “지우”, “경원” 대리점과 거래하는 “모델” 전문점 등 6개 전문점이 10.5%~30%로 아이오페(IOPE) 제품을 할인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리점으로 하여금 상품공급을 중지하게 하다가 동 대리점들과 거래하는 29개 전문점들로부터 연대 가격준수 협약서(화약미준수시 3개월간 상품공급 중지)를 받은 후 아이오페(IOPE) 제품을 공급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한편, 방문판매 유통단계별 출하율을 정해 방문판매원이 할인판매를 하지 않도록 대리점 및 방문판매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2001. 9. 25. “10월 카운셀러 포인트전략추가 「카운셀러 자율신고」”라는 문서를 통해 판매원의 할인판매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1년 하반기에 방판사업부 북부지점에서는 방문판매원의 할인판매를 적발·보고시 일정량의 판촉지급제도를 운영하였고, 또한 “2002년 시판 사업전략” 문서에 대리점의 정도영업(구역내 거래) 원칙을 정하고, 자사제품에 대한 비표조사 등을 통하여 대리점의 도매상 거래, 다점포 이용 타구역 간접거래, 전문점간 상품이동 방지 및 제재조치 방침을 정해 2001. 3월경 북원주 특약점과 거래해야 하는 “제일화장품” 전문점이 광주지역사업부 중앙지점에서 관리하는 특장전문점으로부터 아이오페(IOPE)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판매지역을 벗어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주지점 영업담당과 북원주 특약점장이 “제일화장품” 전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제품을 구입·수거하는 등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p>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8개 화장품 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2단체1701)	<p>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p> <p>(주)태평양, (주)엘지생활건강, (주)코리아나화장품, 애경산업(주), 로제화장품(주), (주)에바스, 라미화장품(주), (주)피어리스는 2002. 5. 22. (사)대한화장품공업협회 회의실에서 영업관련 담당자들이 유통발전대책위원회 소회의인 “가격안정화소위원회”를 개최, 직거래를 요구하는 (주)화장품랜드21에 대하여 직거래 거절 및 지역대리점의 도매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원천차단하기로 합의하였고, 동 회의에서 가격문란 전문점에 대해 공동방문 및 가격계도, 계도불응시 세무조사의뢰 및 제품유입차단, 전문점 재고 전량 수거 등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화장품 전문점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위반</p>	

2002. 12. 30. 심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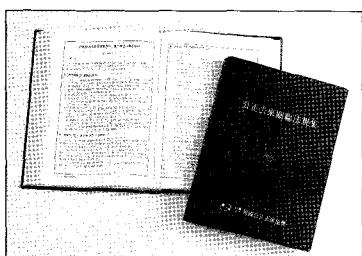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씨엔앰커뮤니케이션(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2유거1646)	<p>씨엔앰커뮤니케이션(주)은 49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라 한다)와 2002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사용료와 관련하여 최혜조건 조항을 설정하고, 동 조항을 위반한 (주)제능스스로방송(JEI), (주)KMTV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변경하고, 과지급 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산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002년중 자기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PP들과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상의 최혜조건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p>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는 “구성사업자 실무 중역회의”를 2차례(2002. 9. 12. 및 9. 25.) 개최하여 자기가 미리 작성한 “대구지역 레미콘 가격인상을 위한 원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2002구사1513)	<p>승요인 분석(안)"을 토대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레미콘을 "대구광역시지역 공표단가표" 대비 83%(약 6% 인상을)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결의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레미콘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은 2002년 9월 17일부터 2002년 9월 29일 기간 동안 자기의 거래처에 위와 같은 내용을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는 등 대구광역시 지역의 레미콘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고,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강행하기 위하여 2002. 10. 1일부터 2002. 10. 5일까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레미콘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유선으로 통지한 후, 구성사업자들의 레미콘 공장 가동중단 상황을 수시로 점검·감시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11,000,000원</p>

공정거래관련 법령들을 집대성한

공정거래관련 법규집



- ❖ 2002년 11월까지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령(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과 공정위 고시, 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
- ❖ 최신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주요 심결 및 판례 수록
- ❖ 공정거래법령과 관계 법령들을 비교 수록함으로써 이해 제고

1,050면/50,000원